

# 중증질환 및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

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등 특례 지원

## 지원대상

중증질환자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, 뇌혈관질환자, 심장질환자, 중증외상환자),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  
다만, 뇌혈관질환자·심장질환자·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

## 지원기간

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암환자 : 등록일로부터 5년

\* 결핵은 등록시작일로부터 치료종료시까지('16.7.1 이후 등록자에 해당)

중증화상환자 : 등록일로부터 1년, 적용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[별첨3]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년간 재등록 가능

뇌혈관질환자·심장질환자·중증외상환자 : 최대 30일 (단, 복잡선형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)

## 지원내용

본인부담 면제,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, 의료급여 절차 예외,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

뇌혈관질환자·심장질환자·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

## 신청절차

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'의료급여(암/희귀,중증난치/결핵,중증화상)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' 를 시·군·구/읍·면·동에 제출